2023.9.11

KIRI 리포트 포커스

보험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오병국 연구위원

요 약

○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다수의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규모가 매우 미미하며 보험업에서의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비보험업에서의 다양한 수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
-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현지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목표로 하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함

-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외연 확대를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규제 혁신 방안이 제시됨

○ 금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해외 자회사 소유 및 담보제공 관련 규제완화를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규제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은행 등 해외 금융회사 소유가 가능해지고, 비보험업 해외 자회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확대되며, 현지 보험영업에 필요한 영업기금 납부를 현지 은행의 신용장제도로 대체 가능하게 됨
-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수익 기반 다변화, 사업경쟁력 강화 및 영업비용 절감이 기대됨

○ 다만,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선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해 자금차입 목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1. 서론

○ 국내 보험산업은 경제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시장 포화 등으로 성장성 및 확장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199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성이 둔화되었음[1)]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 주목[2)]받고 있으나, 이러한 동력으로서 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해외사업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8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함[3)]

- 실물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차원에서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힘

○ 본고에서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현지 영업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 규제개선 방안으로서 크게 ①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완화, ②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완화, ③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의 합리적 개선, ④ 보고·공시 규정의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⑤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이상 5가지가 제시됨
  -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국내 금융회사의 ① 새로운 수익원 창출, ② 적극적인 해외 영업활동 가능, ③ 중복 보고·과도한 공시 등 행정 부담 완화, ④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 이상 4가지도 함께 제시됨

---

1) 조영현(2023. 8),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 『CEO Brief』, 23-16호, 보험연구원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5. 3), "보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7. 17),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 금융지주회사,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전체 금융권역에 걸쳐 순조로운 방안 추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환경으로의 전환이 기대됨

- 과거 금융당국의 종합적인 규제개선은 주로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해외진출 단계별 규제완화[4]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규제개선안은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대부분 금융업권의 해외진출 및 현지 영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 금번 규제개선안에 필요한 조치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은행법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이 예고됨

〈표 1〉 금융당국의 해외진출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구분	주요 내용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2023. 7. 17)	• 은행 및 금융지주 자회사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사의 해외 투자일임 및 자문사 소유 허용 •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해외진출 초기 은행중심지주회사의 자회사 등간 신용공여 한도 초과 한시적 적용 •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 • 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 시 적정담보 의무 예외 적용 • 국내 모기업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일 경우, 해외 자회사가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 모기업과 동일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적용 •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 취득 보고 절차 완화 • 해외 투자법인 관련 중복 보고 부담완화 •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기관제재 대신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 검토 •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 검사 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중점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 실시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2015. 7. 16)	• 현지 인허가 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 조회·회신방식을 개선하고, 해외 지사 등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 •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등에 대한 보증제공을 허용하고, 자회사 등의 계열 해외법인에 대한 무담보 신용공여를 허용 • 금융지주회사의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 승인절차 폐지하고, 은행의 실질지배력이 없는 현지 법인은 내부통제 담당직원의 겸직을 허용 •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 • 금융지주그룹 회사형 공모펀드 등의 최소지분율 규제를 면제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7. 17), “8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7. 16),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7. 16), “금융회사 해외사업 활성화 지원방안”

3. 보험회사 해외진출 현황

○ 국내 보험회사는 1970년대 일부 손해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현지 사무소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을 시도한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에 현지 법인 및 지점 설치를 통해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22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4개 사, 손해보험 7개 사가 미국, 영국, 스위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에 39개의 해외점포(사무소 제외)를 설치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음5)
  - 2018년 말 기준 35개의 해외점포 운영과 비교해 그동안 해외점포 수에 큰 증감이 없었으며, 점포 형태에 따라 28개 현지법인 및 11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해외점포 중 30개는 보험업, 9개는 금융투자업, 부동산임대업 등 비보험업을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어 해외사업에 있어서 보험업의 의존도가 높음

〈그림 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국가 분포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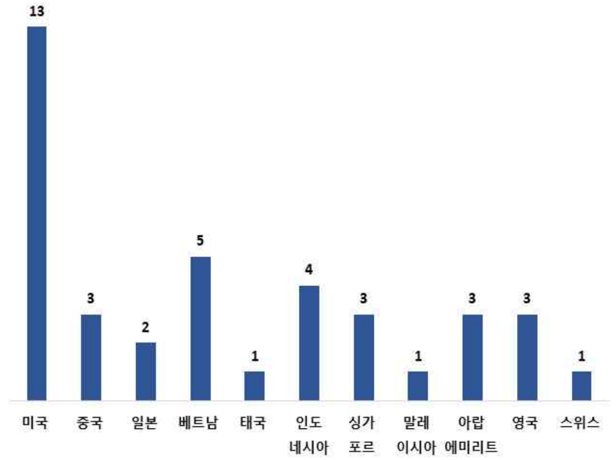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22; 2021. 4. 27; 2022. 5. 25; 2023. 7. 11), "2018~20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그림 2〉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점포 운영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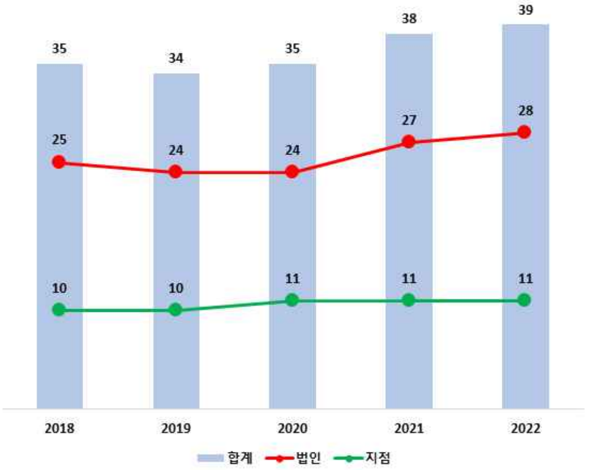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22; 2021. 4. 27; 2022. 5. 25; 2023. 7. 11), "2018~20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신흥시장 신규 진출 및 해외 보험영업 규모 확대 추세로 인해 자산 및 부채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음

- 해외사업 관련 자산의 증가세는 해외진출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이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경영 부분이 되기엔 해당 규모는 매우 미미함
  - 2022년 말 기준 해외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보험회사의 총자산 대비 해외점포 자산의 비중은 0.9%에 불과함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 7. 11), "20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그림 3>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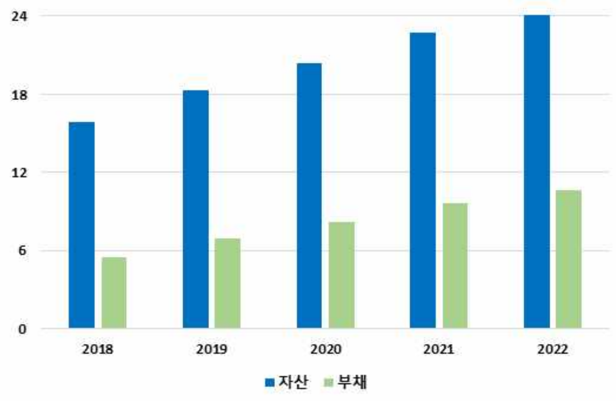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22; 2021. 4. 27; 2022. 5. 25; 2023. 7. 11), “2018~20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그림 4>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재무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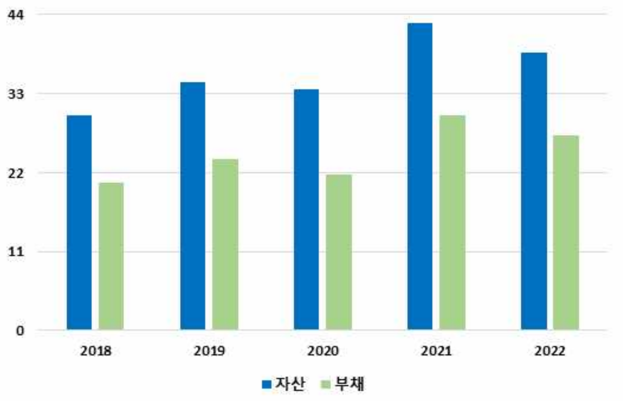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22; 2021. 4. 27; 2022. 5. 25; 2023. 7. 11), “2018~20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 최근 5년간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손익현황의 경우 연간 당기순이익이 현지 영업 여건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보험업 당기순이익은 전반적으로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나, 현지 보험시장의 경쟁도·현지화 역량의 차이 등으로 매출 확대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비용관리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보험업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자 혹은 보험업 대비 미미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어 금융투자업, 부동산임대업 중심에서 벗어난 사업다각화를 통해 신규수익원 및 시너지 효과 창출, 위험 분산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5>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손익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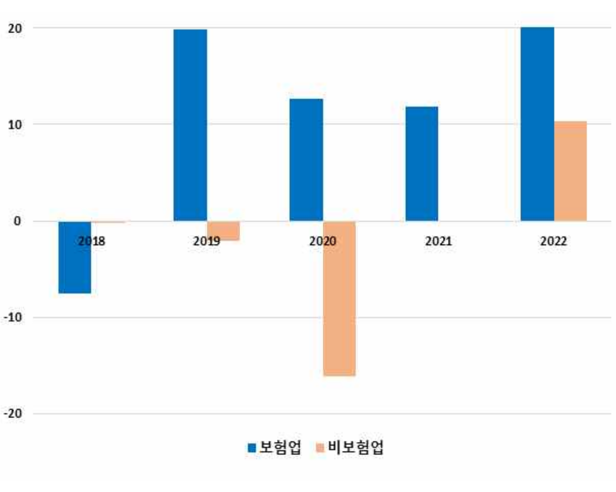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22; 2021. 4. 27; 2022. 5. 25; 2023. 7. 11), “2018~20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그림 6>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손익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4. 22; 2021. 4. 27; 2022. 5. 25; 2023. 7. 11), “2018~2022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4. 결론 및 제언

○ 금번 규제개선안에 포함된 ①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② 보험회사 해외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허용을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험회사의 은행 등 해외 금융회사의 소유가 가능해지고, 비보험업 해외 자회사의 사전신고 대상이 확대되며, 현지 보험영업에 필요한 영업기금 납부를 현지 은행의 신용장제도로 대체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기반 다변화, 사업경쟁력 강화 및 영업비용 절감이 기대됨
  -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해외 사업부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면서 국내 사업에서의 외형경쟁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해외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전략을 국내 시장에도 적용해 보험회사의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다만,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조달 및 자회사 자산운용 지원과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보험회사는 해외 보험업에서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실현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시장이 덜 포화된 동남아 보험시장을 더욱 주목함에 따라 해외 보험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업 관련 주요 진출 방식인 합작법인(Joint Venture), 신설투자(Greenfield Investment),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M&A)은 해외사업에 대해 강한 통제력을 가지는 이점이 있으나, 투자 대비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 투자 방식이므로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시킬 방안이 추가로 필요함
  - 현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총 발행한도도 자기자본의 1배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6)]
  - 국내 보험회사가 진출한 국가에 다수의 보험회사가 진출해 있는 일본, 프랑스, 영국은 보험회사 채권 발행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7)] 특히 과거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관리에 이점이 있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신속히 해외사업을 확대한 바 있음[8)]
  - 이와 유사하게 보험회사의 해외 보험사업에 한정하여 자금차입 목적제한을 완화하거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을 활용하여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9)]
-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업 및 비보험업 자회사를 설립한 후 안정적인 초기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투자일임업 겸영이 가능함[10)]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을 통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지원 목적에 한정한 투자일임업 등록의 경우 등록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향후 자본시장법[11)] 개정에 반영해 볼 수 있음

---

6)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7) 전용식·김유미(2019. 5. 13),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8)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trending/0btpf6qtoq-ix8fn2zxl9w2
9) 다만, 해외사업 목적의 자금차입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운용자산이익률 대비 과도한 금리 수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행 허용이 필요할 것임
10) 보험업법 제11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하는 것을 말함
11) 자본시장법 제18조 및 제19조